

Issues in Development

개발과 이슈

제60호 | 2020. 7월

개발자원:
TOSSD와 혼합자원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은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 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KOICA ODA 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제3자에게 권리(저작권)가 있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용 허락은 사용자가 권리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바랍니다.

박수영, 고요한. 2020. "개발자원 : TOSSD와 혼합자원 논의를 중심으로." **개발과 이슈**, no. 60.

저자

박수영_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정보센터 센터장
carpediem@koica.go.kr

고요한_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정보센터 과장
yohanko@koica.go.kr

개발자원: TOSSD와 혼합자원 논의를 중심으로

목차

요약

I. 서론

II. TOSSD

1. 배경 및 정의
2. TOSSD의 체계
3. TOSSD 체계의 변화
4. 함의

III. 혼합자원

1. 배경 및 정의, 동원자원 규모
2. 혼합자원의 구조와 채널
3. 주요 채널 사례

IV. 제언

1.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변화 필요성
2. 역량 강화
3. 새로운 사업 추진과 시스템 구축

V. 결론

요약

2010년 이후 개발협력 지형과 환경은 눈에 띄는 큰 변화를 보여 왔다. 개발협력의 목적, 재원의 종류, 개발협력 참여자, 협력 형태 등이 다양해지고 수원국과 공여국의 이분법적 체계를 벗어나 상호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협력 활동 측정 및 체계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하는 통계 개념으로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총공적지원(TOSSD)를 고안하여 유엔을 통해 도입을 확정하였다. 또한 개발재원 부족 문제를 공적재원과 민간재원과 융합을 통한 혼합재원으로 해결하고자 혼합재원의 정의, 체계, 원칙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개발협력 관련 규범 및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 및 투자분석, 경제성 분석, 디지털 기술 및 환경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펀드, 프로젝트, 퍼실리티 채널을 활용한 혼합재원 사업 추진,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는 공동연구 개발사업 확대, 증거중심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와 데이터관리의 주류화에 힘써야 한다.

한편, TOSSD 체제 도입으로 인한 ODA 중요성의 상대적 축소, 민간재원 동원을 통한 상업적 이익의 병행 추구로 인한 취약국과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감소 우려를 고려하여, 이러한 변화가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는 실제 지원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I. 서론

21세기 들어 개발협력 환경은 매우 큰 변화에 직면했다. 첫째, 개발협력의 목적이 경제발전에서 사회복지 증진,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과 평화와 보편적 인권 보장 등으로 다변화했다. 또한, 다변화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도 증대하여, 이제 공적 재원이 아닌 민간재원 등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재원을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원 시스템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세 번째로 개발협력 참여자도 기존의 정부 중심에서 시민사회단체, 기업, 민간재단, 대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공여국과 수원국이라는 이분법적 분류가 무색하게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이 증대하며, 공여국이자 수원국인 국가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체계가 보여주듯 개발협력의 목표달성을 통해 글로벌 사회 전체가 혜택을 받는 호혜적 활동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세계는 초연결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 간 연결이 전례 없이 긴밀한 상태이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가 보여주듯 이러한 초연결사회에서 세계가 공유하는 혜택과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협력도 수원국과 공여국의 이분법적 체계를 벗어나 상호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과 과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협력의 목표와 내용, 수단, 체계의 변화는 개발협력 활동 측정 및 분류 체계의 변화를 요구했다. 따라서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지난 2015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보완한 새로운 통계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을 고안하고 유엔을 통해 도입을 확정하였다. 한편, 변화하는 개발협력환경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여, 민간재원과의 융합을 통한 혼합재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수단과 체계,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논의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원 체계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첫 번째로 TOSSD 체계에 대해 분석하고, 새로운 개발협력환경에서 TOSSD 체계 도입이 주는 함의를 정리한다. 두 번째로 다양한 개발자원 논의에서 혼합재원의 의미, 도입을 위한 수단과 사업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협력체계에 맞춰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방향 변화를 제안한다.

II. TOSSD

1. 배경 및 정의

TOSSD는 2010년 이후 변화한 개발협력 지형과 환경을 반영한 ODA 정의의 현대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21세기의 개발협력 환경은 20세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개발협력 측정 및 통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박수영 2017).

ODA가 아닌 새로운 개발협력 통계기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2012년 EU에 대한 OECD/DAC의 동료검토 이후 시작되었다. 국제사회는 앞서 설명한 여러 이유를 근거로 ODA 정의의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4년부터 새로운 지표로서 TOSSD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15년 7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개발재원총회에서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이 채택되었고, TOSSD가 개방성, 포괄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도입될 것임을 공식화하였다.

즉, OECD/DAC에서 논의가 시작된 TOSSD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전 세계적인 개발협력 통계 측정의 주요 지표로 확정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 결의에 따라 공여국과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였고, 동 TF는 2019년 6월 TOSSD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TF는 또한 TOSSD 측정을 위한 준비로 데이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9년 10월 뉴욕에서 발표했다.¹⁾ OECD/DAC는 2020년 2월 TOSSD 통계지침을 수립하고, 7월과 10월에 걸쳐 TOSSD 통계를 수집할 예정이다.

TOSSD의 정의는 2014년 이후 조금씩 변화했다. 2020년 2월 통계지침에 따르면, TOSSD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공적으로 지원되는 모든 자원으로 정의된다(OECD 2020). 이는 i) 개발도상국으로의 국경 간 자원 흐름과 ii)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및 개발촉진제를 지원하는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자원을 포함한다.²⁾ 이 정의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면, TOSSD의 정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최초로 명시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와 동일하다. 즉, 다음 세대의 필요 충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

1) 'Permanent Miss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to the U.N.',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TOSSD) statistical measure includes all officially-supported resources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includes i) cross-border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ii) resources to support development enablers and/or address global challenges at regional or global levels."

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TOSSD에서 개발의 지속가능성은 SDGs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공적으로 지원되는 자원이란 TOSSD가 공적자원과 공적자원으로 동원된 민간자원을 모두 포함하여 계상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ODA와는 크게 달라진 개념이다. ODA가 공적자원만을 인정하는 반면, TOSSD는 공적개발자원을 통해 추가되는 민간자원을 모두 인정한다. 국경 간 자원 흐름이 의미하는 것은 TOSSD는 대상 국가로 이전된 자원의 흐름(flow)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뒤에 나오듯이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는 이전되지 않은 자원도 TOSSD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후 TOSSD 체제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글로벌 도전 과제는 전 지구적 규모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바,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나 문제를 의미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 공해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발촉진제는 국제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³⁾ 제공을 돕거나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지원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주로 국제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며, 최종적 국제공공재에 대해 “중간재적” 국제공공재로 여겨질 수도 있다.

2. TOSSD의 체계

TOSSD는 <표 1>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필러(Pillar)1은 TOSSD 적격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국경 간 자원의 흐름을 의미하며, 기존 ODA 개념이 목적, 대상국가나 기관 등의 면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Pillar2는 TOSSD 도입과 함께 새로 정의된 분야로 국제공공재 및 개발촉진제를 지원하거나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여국 내 지출 또는 지역적(regional), 지구적(global) 협력을 위한 지출을 포함한다. 즉, 기존의 ODA는 개발인식 증진이나 최초 1년간 난민 정착 비용 등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공여국 내 지출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TOSSD 체제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발문제의 초국가적 연결성과 상호 연계성을 인정하여,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이나 혜택을 위한 활동이라면 국경 간의 자금 흐름이 아니더라도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3) 국제공공재(PG) : 비배타적이며 두 개국 이상에서 소비 가능한 이득을 제공하는 재화. “재화”는 자원, 생산물, 서비스, 제도, 정책, 조건 등을 포함한다.

〈표 1〉 TOSSD 체계

구분	필러 1 : 국경 간 재원 흐름	필러 2 : 지구적/지역적 지출
정의	TOSSD 적격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양자 및 다자 협력	국제공공재 및 개발촉진제를 지원하고,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여국내 지출 또는 지역 및 국제적 협력
요건	• SDGs 세부 목표 달성에 1개 이상 기여하며, • TOSSD 적격 국가에 혜택	•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 TOSSD 적격 국가 또는 국민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또는 • TOSSD 적격 국가와 직접 협력을 통해 집행
대상	TOSSD 적격 국가 또는 다자기관	공여국 내/지역별/또는 국제적 활동
예시	• 수단 내 UN 평화유지군 활동 참여 • 피지 기후변화 적응 지원 • 베트남 기후변화 적응 농업 기술 개발 연구 지원	• 국제사법재판소 활동 지원 • 글로벌 환경 감시 시스템 지원 • 한중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연구 지원

출처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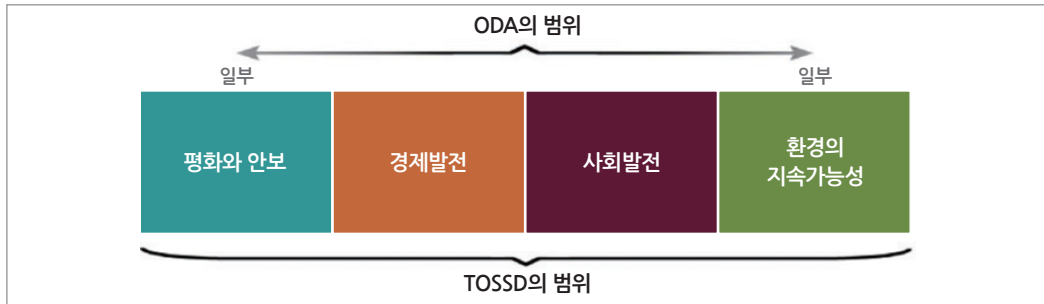
3. TOSSD 체계의 변화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TOSSD 체계는 개발협력의 네 가지 지형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된 통계 기준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네 가지 변화별로 TOSSD의 데이터 수집 및 인정 범위가 ODA에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1) 지원 목적 다변화

1950년대 개발협력의 주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이었다. 그러나 자본 투입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자립은 경제학자들의 예측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1970년대 이후로는 교육, 보건 등 인간의 기본 욕구(Basic Human Needs; BHN) 충족을 위한 사회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등으로 개발협력 대상 분야가 확대되었다. 2010년대 이후 기후변화, 내전, 민주화 요구 등으로 난민 문제 및 인간 안보의 취약성이 대두되면서 평화와 안보 또한 중요한 개발협력 의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즉, SDGs의 5P는 경제개발(prosperity), 사회개발(people), 환경보존(planet), 평화와 안보(peace)라는 4개의 개발 목표를 대표하는 P와 이 네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파트너십(partnership)의 P로 구성되며, TOSSD는 이러한 SDGs 체제를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그림 1〉 ODA와 TOSSD의 목적 비교



출처 : OECD 2016b, 14

따라서 TOSSD는 이전에 ODA 체제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Box 1〉은 평화와 안보 관련 이전에 ODA 목적코드에는 없었던 새롭게 추가된 OECD 통계 목적 코드들을 보여준다.

〈Box 1〉 평화와 안보 관련 추가된 목적들

- UN평화유지군 활동
- 국제조직범죄대응
-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및 예방
- 사이버 보안
- 국제사법정의활동
- 대량살상무기 감축 지원

출처: OECD TOSSD 사이트⁴⁾를 참고로 저자 작성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활동의 경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은 국제공공재이며 기후변화 대응은 글로벌 도전 과제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Pillar2의 활동이 대폭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활동이라면 공여국 내 지출도 TOSSD로 인정된다. 탄소포집이나 재조림(reforestation)과 같이 온실가스 저장 촉진 활동에 사용되는 공여국 내 지출까지도 인정한다.

4) <http://www.oecd.org/dac/tos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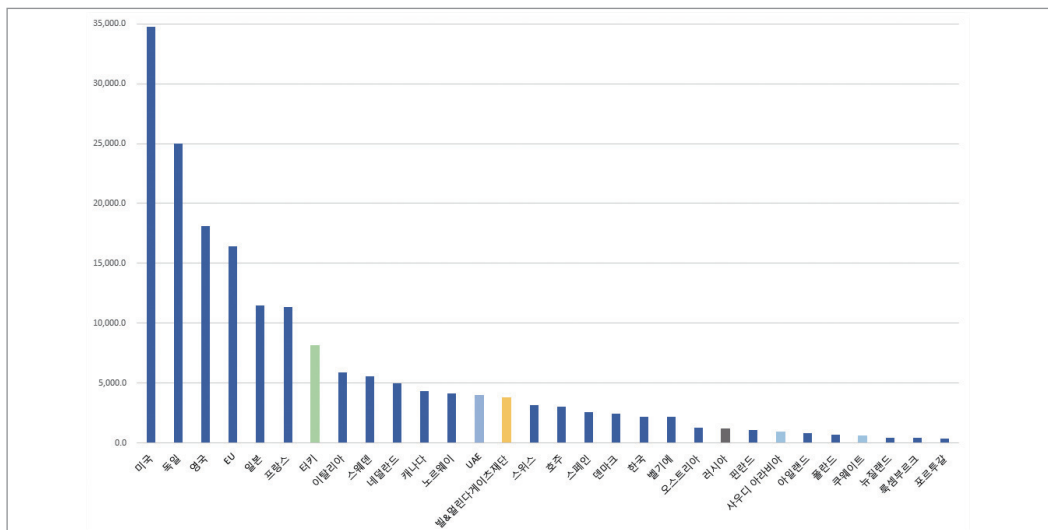
2) 행위자 확대

ODA의 정의가 마련된 1970년대에는 주요 행위자와 협력 형태가 단순했다. ODA의 제공 방식은 크게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으로 구분되었다. 양자협력은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정부와 제공받는 수원국 정부로 구성되었고, 다자협력은 재원을 제공하는 공여국, 협력 업무를 집행하는 국제기구, 그리고 최종 수원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SDGs 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SDGs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SDGs 체제에서 이해관계자는 정부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기업, 민간사기업, 국부펀드, 민간자선재단, 대학과 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정부행위자에도 변화가 있어 기존의 공여국과 수원국의 이분법적 구분의 유효성이 점차 퇴색되고 있다. 보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수원국이면서 공여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실제 ODA 통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래 <그림 2>는 2017년 OECD 통계에 따른 ODA 지출액 기준 상위 30개 공여주체를 보여준다. 이 중 터키는 OECD 회원국이나, DAC 회원국은 아니다.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4개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니다. 심지어, 금액 기준 14위를 차지한 기관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으로 국가가 아닌 민간자선단체이다.

<그림 2> 전 세계 30대 주요 공여국가 및 기관 (2017년 실적 기준)



출처 :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V_DCD_DCRPROFILES

또한, 다양한 활동주체의 SDGs 달성 기여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TOSSD는 OECD/DAC 지정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가 아닌 지역기구나 국제기구와 이니셔티브, 기관들의 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한편, 행위자의 변화는 공여국 측면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TOSSD 지원 대상 국가에도 변화가 있다. ODA의 경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OECD/DAC가 정하는 수원국 목록에 포함된 국가 및 영토를 대상으로 한다. TOSSD는 이를 확대하여 전통 공여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추후 확정될 절차에 따라 TOSSD 지원대상국으로 인정되면 3년간 TOSSD 대상국이 될 수 있다. TOSSD 체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이전과 다른 재난이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국가들이 ODA 적격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도모한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에 의해 보다 극심해지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카리브해의 ODA 졸업 국가들이나 내전 등으로 고통 받는 리비아 등의 국가도 TOSSD 체제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래 <표 2>는 향후에 TOSSD 대상국이 될 수 있는, 1989년부터 2018년까지의 ODA 졸업국가들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표 2> TOSSD 대상국이 될 수 있는 ODA 졸업국들 1989-2018

연도	국가
1992	프랑스령 기아나, 과달루페, 마르티니크, 레위니옹, 생피에르미클롱
1996	바하마, 브루나이, 쿠웨이트,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1997	버뮤다, 케이맨제도, 대만, 사이프러스, 포클랜드제도, 이스라엘
2000	아루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지브롤터, 리비아,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뉴칼레도니아, 북마리아나제도
2003	몰타
2005	바레인
2011	사우디아라비아, 터크스케이커스제도, 바베이도스, 마요트, 오만, 트리니다드토바고
2014	앵귈라, 세인트키츠네비스
2018	칠레, 세이셸, 우루과이

출처: <http://www.oecd.org/development/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historyofdaclistsofaidrecipientcountries.htm>

행위자의 확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은 공여국 내 행위자의 활동 인정이다. ODA는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재원 이동 활동을 인정한다. 공여국이 직접 또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자금의 이전(transaction)이 발생해야만 ODA로 인정될 수 있었다. ODA 체제에서 공여국 내의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공여국 내 난민에 대한 지원(최초 12개월만 인정), 개발인식증진을 위한 연구 및 홍보활동, 수원국 시민에 대한 공여국 내 훈련과 교육비용만이 ODA로 인정되는 제한적인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제 공여국 내 난민에 대한 지원은 난민을 출신국으로 돌려보내려 하지 않는다면,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TOSSD로 인정된다. 연구 활동의 경우, TOSSD 적격국가의 SDGs 달성에 최종적으로 기여하게 된다면 공여국 내 지출도 인정된다.

행위자 변화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이다. 남남협력은 그 정의상 OECD/DAC의 ODA 통계에 포함되어 관리되지 않았다. 사실상 남남협력의 정확한 규모가 확인된 바는 없다. 삼각협력의 경우, OECD는 회원국들에 통계 제출 시 해당 사항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수집된 통계정보가 매우 미미하여 그간 통계정보에서 배제하는 부분도 논의되어왔다.

남남협력은 1955년 반둥회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반둥회의에서 독립을 촉구하고 상호 이익 증진과 경제 및 문화 협력 강화를 요구했다. 이후 1978년 UN은 UN남남협력사무국(UN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 ; UNOSSC)을 설치하고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관련 정책의 틀을 만들어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교류 증진을 위해 활동한다. 남남협력의 “남(South 또는 Global South)”은 주로 남반구에 위치하는 개발도상국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홍콩, 마카오,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 중남미 전체와 멕시코, 아프리카 전체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지역 전체를 포함한다.⁵⁾

남남협력은 형태와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정확한 정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UN에 따르면 남남협력은 “둘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정부, 지역기구, 시민사회, 학계와 민간부문 등의 협력을 통해 지식, 스킬, 자원, 기술적 노하우를 교환함으로써 그들의 독자적 그리고/또는 공유된 국가 역량 개발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⁶⁾ 한편, UNOSSC는 남남협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기술의 영역에서 남반구 국가들 간의 협력을 위한 폭넓은 프레임워크로 정의하며, 양자, 다자, 지역 간, 지역 내 협력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한다.⁷⁾

5) <http://www.arab-ecis.unsouthsouth.org/about/what-is-south-south-cooperation/>

6) <http://undocs.org/SSC/17/3>

7) <https://www.unsouthsouth.org/about/about-sstc/>

남남협력의 중요한 분기점은 2008년 이후 중국,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신흥 공여국으로 대두되면서부터이다(ESCAP 2018). 중소득국으로 약진한 개발도상국들이 기술과 지식의 제공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브라질 등 BRICS 국가들이 주도한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설립은 서구 주도의 다자개발은행의 대체재로 대두되었고, 남남협력은 개발협력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주목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부상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통 공여국 경제성장의 둔화, 다양한 개발 이슈 대응을 위한 추가 재원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와 AAAA, OECD의 원조 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과 같은 개발협력 정책의 대 전환을 가져온 주요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남남협력이 중요한 협력 방식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TOSSD 체제가 남남협력을 개발협력활동 통계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면서, 이제 남남협력의 정의와 방식, 규모가 보다 명확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각협력은 전통 공여국 또는 다자기구가 남-남 이니셔티브에 펀드 제공, 역량개발, 관리 및 기술 시스템 제공 등의 역할을 제공하는 협력 형태를 의미한다.⁸⁾ 삼각협력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고, 국제기구나 공여국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들이 공동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ESCAP 2018). 3국 이상의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통한 삼각협력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도-브라질-남아공 펀드는 남남협력을 지원한다.

남남협력과 마찬가지로 삼각협력도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며, 삼각의 협력관계 주체에 따라 기존의 ODA 통계 체제로는 반영할 수 없는 활동들도 수행되었다. TOSSD는 SDGs 달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바, 다양한 형태의 삼각협력이 보다 정확하게 보고,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분화를 고려할 때, 정부 대 정부의 협력을 근간으로 구축된 ODA만으로는 개발협력 관련 활동의 통합적인 규모와 양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TOSSD 체제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SDGs 달성을 위한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파트너십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TOSSD 도입으로 개발협력의 다양한 행위자가 SDGs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들에 대해 보다 정확한 통계를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8) <https://www.unsouthsouth.org/about/about-sslc/>

3) 재원과 금융수단 변화

단순하게 서술하면 ODA는 무상증여와 양허성 차관을 주요 금융수단으로 활용하여 집행된다. 그러나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연간 3.9조 달러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동원 가능한 재원의 크기는 연 1.4조 달러로 예측되고 있으며, 2.5조 달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OECD 2018a). 따라서 ODA만으로는 SDGs 이행이 불가능하며,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현재 동원 가능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함과 동시에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TOSSD 체제에서는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해 동원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SDGs 달성을 위해 공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되는 재원은 민간재원이라 할지라도 개발재원으로 포함하여 TOSSD에 산정된다. 또한, 다양한 민간금융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s; PSIs)의 활용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SDGs 달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금융 기법과 수단을 확대하였다.⁹⁾ 즉, TOSSD는 개발을 위한 지원에서 공적인 연계성이 없는 송금(remittance)과 같은 순수민간재원을 제외한 모든 재원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4) 초국가적 상호 이익 반영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과 난민 증가는 지구에 사는 인류의 상호 연계성이 전례 없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서 행위자의 다양성 부분에서 개략적으로 서술한 바와 같이, 최종 수혜자에 TOSSD 대상 국가가 포함되며 SDGs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은 모두 TOSSD로 인정된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보여주듯 감염병은 공여국과 수원국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력해진 태풍, 사이클론, 해일, 쓰나미 또한 그러하다. 반면, 복잡하고 어려운 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활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따라서 TOSSD 체제는 글로벌공공재 공급이나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며, 공여국 내 지출의 범위와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예를 들어, TOSSD 체제에서는 i) TOSSD 국가가 아니거나, ii) 공여국 내 연구개발, iii) 다자기관의 연구개발이라도, 세 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Pillar2 지원으로 인정된다(OECD 2020). 첫 번째는 SDGs 관련 연구로 한 개의 TOSSD 대상 국가를 포함하며, 두 개 이

9) 민간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3장 혼합재원 참조.

상 국가에 잠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또는, 대중이 사용 가능하도록 개방된 과학 출판물 및 연구 데이터도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실험 개발의 경우, a) 공적 영역에 투입되거나, b) 비독점적 인허가와 같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거나, c)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지원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경우에도 TOSSD로 인정된다(OECD 2020).

구체적인 사례로 EU는 800유로 규모로 Horizon 2020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다.¹⁰⁾ 이 중 “저탄소, 기후변화대응 미래 구축” 영역에서는 SDGs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에너지 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선별하여 지원한다. Horizon 2020은 개발도상국을 특정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즉, 선진국 출신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팀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연구들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도전과제 관련 지원이며, 결과가 개방되므로 Pillar2의 TOSSD로 인정된다. EU가 추진하는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¹¹⁾이나 LIFE 프로그램¹²⁾ 역시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지원임이 인정되어 TOSSD로 계상된다.

4. 합의

1) 재원 규모의 변화

TOSSD는 개발재원의 측정 범위 및 보고 주체의 포괄성, 측정 정보의 구체성을 통해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개발재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범 관행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상호학습, 개발 파급효과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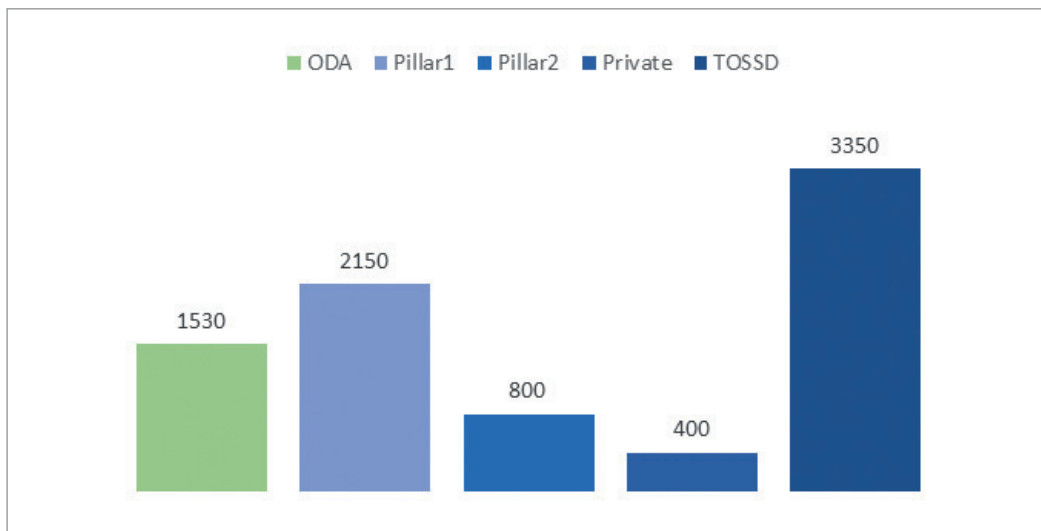
2019년 데이터 조사 결과는 TOSSD 도입으로 개발재원의 규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을 보여준다. <그림 3>이 나타내듯 TOSSD의 규모는 기존 ODA 대비 증가함이 드러났다. 첫 번째 데이터 조사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다자기구, 신용기금 등이 참여하였으며, 조사 결과, TOSSD를 통하여 양자, 다자원조 모두에서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발재원이 보고되고, 새로운 보고 주체들(남남협력, 신흥 공여국, 다자기구 등)이 참여함에 따라, 전체 개발재원 총액이 기존 ODA 측정 방식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 참고.

11) <https://scihub.copernicus.eu/>

12) <https://ec.europa.eu/easme/en/life>

〈그림 3〉 TOSSD와 ODA 규모 비교 (기준년도 2018년, 단위 :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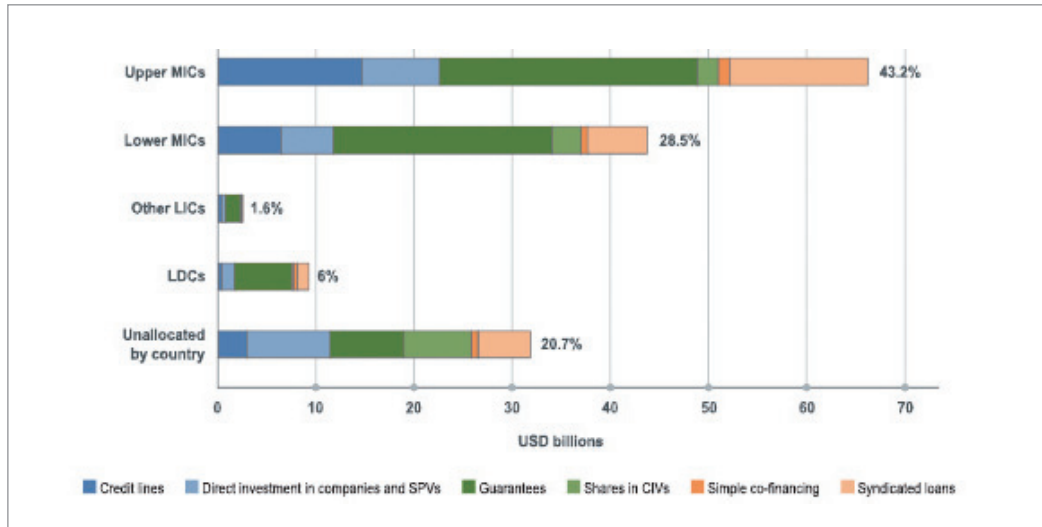
출처 : "TOSSD, TRACKING RESOURCE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 Presentation of the findings of the first TOSSD Data Survey" 발표자료와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조사 참여 국가의 숫자가 많지 않았음에도 TOSSD의 규모는 같은 해 ODA 규모를 훨씬 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TOSSD의 실제 예산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개발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TOSSD 추산으로 그 의미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들이 TOSSD 통계 규모와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화 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판도 있다. TOSSD 체제 도입으로 인해 Pillar2라는 새로운 통계 범주가 생성되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ODA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간재원 동원을 통한 상업적 이익의 병행 추구도 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보다는 투자 환경을 갖춘 중고소득국으로 개발재원이 집중되어, 취약국이나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박수영, 조한슬 2015). 이러한 우려가 기우만은 아닌 것이 혼합재원 대부분이 중고소득국에 지원되고 있음이 통계로 나타난다.

〈그림 4〉는 2012년부터 2017년간 공적개발재원이 동원한 민간자본규모를 소득그룹별로 나타냈다. 민간자본의 71.7%는 중고소득국에 배분되었고, 오직 6%만이 최빈국에 투자되었다.

〈그림 4〉 공적개발재원으로 동원된 민간자본규모 (2012-2017)



출처 : OECD/UNCDF 2019, 19

총액 뿐 아니라 규모 또한 소득 수준과 연관이 있다. 〈표 3〉이 보여주듯 재원 동원 1건 당 동원된 민간자본의 규모는 최빈국의 경우 610만 불에 불과하나 중고소득국은 열 배인 6,100만 불이다. TOSSD 체제는 민간재원동원을 통한 SDGs 달성 촉진을 의도하고 인정 재원의 폭을 확대하였으나, 이러한 변화가 가장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최대 수혜자로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표 3〉 소득그룹별 평균 동원 규모와 건수 (2012-2017)

	미배분	최빈국	기타최빈국	중저소득국	중고소득국
계약 건수	565	1,513	179	1,608	1,087
1건당 동원된 민간재원의 평균 금액(백만 달러)	56.5	6.1	13.9	27.3	61
동원된 민간재원 총액(억 달러)	319	93	25	439	664

출처 : OECD/UNCDF 2019, 25

2) 지원내용의 변화

TOSSD로 지원이 가능한 활동은 SDGs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SDGs는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활동들도 TOSSD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여국들은 이제 자국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분야로 지원 분야 및 범위를 수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생충 감염 예방 활동보다는 자국 내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활동에 더 많은 지원이 배정될 수도 있다. 또는, 자국 기업이나 기관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지원하는 데 TOSSD 활동이 집중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TOSSD의 전체 규모는 증가하여도, 취약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으로의 실제 지원은 더 감소할 우려가 있다.

난민(refugee) 지원 문제를 예로 들어 보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 ODA는 공여국 내 난민 지원을 최초 1년간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그러나 TOSSD는 망명신청자(asylum seeker)를 포함한 난민에 대한 공여국 내에서의 임시생계비 지원과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여 계상한다. 기후위기가 내전 및 민주화 요구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난민 발생이 증가하며, OECD 회원 국가들이 ODA로 보고한 공여국 내 난민 지원액은 2012년 30억불 규모에서 2016년에는 154억불로 최근 급증했다(OECD 2017a). 비율도 증가하여 2014년 전체 ODA의 4.7%에서 2016년은 10.8%로 상승했다.

난민지원액이 증가하며 공여국 내 지출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2016년 기준 DAC 회원국의 ODA 중 154억 불은 공여국 내 지출이며 이는 2010년 32억5천만 불에 비해 거의 네 배가 증가한 것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2016년 ODA가 전년도에 비해 7.8% 증액되었다. 그러나 공여국 내 지출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은 1.4% 감소했다. 2018년 OECD 통계를 기준으로 DAC 회원국 중 체코(24.95%), 그리스(72.24%), 이탈리아(50.03%), 스페인(25.14%) 4개 국가는 전체 ODA의 20% 이상을 공여국 내 난민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다. 현재 ODA에서 공여국 내 지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TOSSD 체제로 공여국 내 지출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면, ODA의 중요성이나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표 4>는 호주 중앙 및 지방정부의 난민 비용 비중이 2014년 호주 GDP의 0.23%에서 2017년 0.75%로 3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OECD가 공여국들에게 권고하는 GNI 대비 ODA 비율인 0.7%를 상회한다.

〈표 4〉 호주 정부 준위별 난민 비용 추산

난민, 망명신청자 및 통합관련 지출의 GDP 대비 %	2014	2015	2016	2017
연방정부	0.14%	0.24%	0.50%	0.50%
지방정부	0.09%	0.14%	0.23%	0.25%
계	0.23%	0.37%	0.73%	0.75%

출처 : OECD 2017b, 2

또다른 난민 수용 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난민 지원 비용은 첫해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7년간 추산 시 총 비용은 약 6만 유로에 달한다(OECD 2017b). 현재 ODA 체제에서는 그 중 첫 일년간 지원된 비용인 약 14,000유로만이 ODA로 인정된다(OECD 2017b). TOSSD 체제에서는 6만 유로가 모두 TOSSD로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공여국들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인 자금을 이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이 난민이 궁극적으로 난민 수용국가(hosting country)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한다(e.g. Ager and Bruckner 2013 ; Ortega and Peri 2014 ; Clemens 2011).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서유럽 15개국에서 망명신청자들의 경제적, 재정적 영향을 측정한 연구는 초기 난민에 대한 지출이 이후 난민들이 지불하는 세금으로 환수되므로 난민신청자가 영구시민권자가 되면서 거시경제적으로 수용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d'Albis, Boubtane, and Coulibaly 2018) 미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약 20년간 평균 21,000불을 세금으로 추가적으로 납부하며 미국 경제에 순이익을 가져다준다(Evans and Fitzgerald 2017). 그러나 TOSSD는 난민이 공여국 경제에 미치는 이익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공여국의 실제 비용을 과다 계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TOSSD 체제가 개발도상국의 기회 비용이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실제 지원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III. 혼합재원

1. 배경 및 정의, 동원재원 규모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SDGs의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는 현재 동원 가능한 개발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함과 동시에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혼합재원은 이렇게 부족한 개발재원을 보완하는 역할로 국제사회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재원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단 과거 십년 이상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초기에는 단순히 양허적인 자금과 비양허적인 자금의 혼합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이들 자금의 출처까지 포함하여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SDGs 채택 이후 민간재원 동원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국제기구나 기관들은 혼합재원 운용을 위한 여러 가지 공통의 기준을 수립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며 혼합재원의 목적, 특징, 형태, 정의, 원칙을 표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표 5〉 혼합재원의 다양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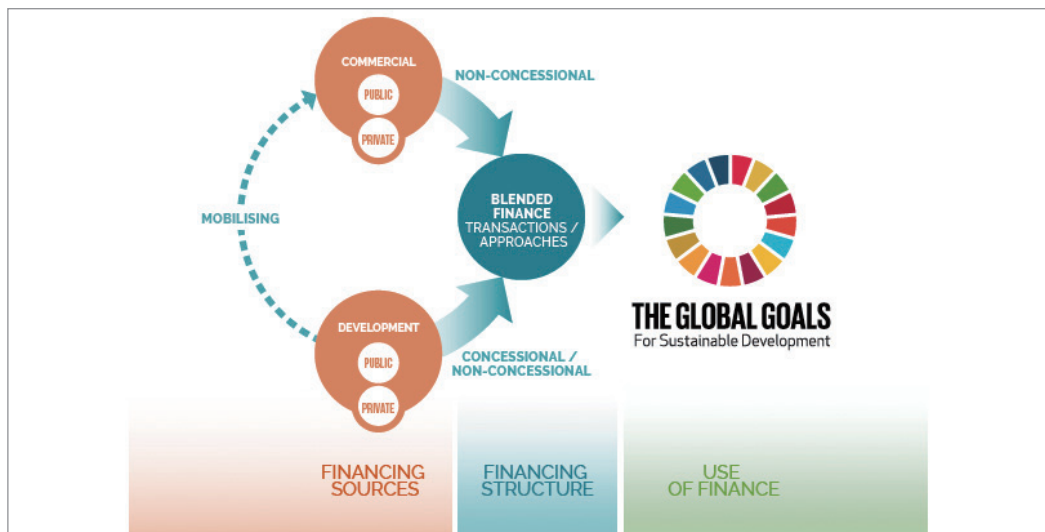
기관/학자	정의
OECD(2018)	개도국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동원하는 개발금융의 전략적 활용
Klein(2016)	공공 및 민간 재원의 혼합
OECD/WEF(2016)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는 민간 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개발금융 및 자선기금의 전략적 사용
IFC(2016)	자연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을 곳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 위험분담제로서 공여 파트너로부터의 양허성 기금을 상업적 개발기관 및 민간 투자자들의 기금과 혼합하는 것이 전형적
EC(2015)	여타의 원조방식을 보완하는, 해외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적절한 지역, 국가적 차원과 그 이상의 차원의 정책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수단. 메커니즘의 원칙은 EU 증여를 공공 및 민간 금융의 대출 또는 자본투자과 혼합하는 방식
UN(2015)	양허적인 공공재원과 비양허적인 민간재원의 혼합
Mustapha 외 (2014)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하도록 금융을 제공하는, 민간과 공공으로부터의 증여 및 비증여의 상호보완적인 사용
Eurodad(2013)	ODA에 의해 제공되는 증여의 요소와 공공기관 또는 상업적 대출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대출을 연계하는 메커니즘

출처 : 임소영 2018, 11

한편, OECD DAC에서는 혼합재원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에 투입될 추가적인 재원 (additional finance)을 동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재원(development finance)을 활용하는 것’¹³⁾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그림 5 참고) 개발재원이란 공적재원에서 제공되는 양허적 또는 비양허적 개발재원과 개발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선 재단에서 제공하는 민간자금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재원이란 근본적으로 개발목적 보다는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공 또는 민간의 상업자금을 일컫는다. 결국, 혼합재원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같은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자금을 개발로 끌어들이어 혼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혼합재원은 종종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또는 임팩트 투자와 혼동되는 경향이 있다. <Box 2>는 이들 개념의 차이를 보여준다.

OECD에서는 이러한 공적개발재원¹⁴⁾이 동원한 민간재원의 규모를 2012년부터 수집해오고 있는데 2012년 153억 달러에서 2018년 484억 달러로 6년 사이 그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지금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동원된 민간재원은 SDGs 달성 기한이 다가올수록 그

<그림 5> 혼합재원의 정의



출처 : OECD 2018a, 52

13) 영어 원문은 strategic use of development finance for the mobilisation of additional finance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이다.

14) 보증, 신디케이트 대출, 기업/특수목적회사 직접투자, 집합투자기구 지분참여, 공동자금지원, 신용한도, 프로젝트파이낸스 총 7종류의 수단으로 구성.

〈Box 2〉 혼합재원, PPP, 임팩트 투자의 차이

혼합재원은 두 가지 개념과 혼동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s)이다. PPPs는 공공이 제공해야 하는 인프라 및 서비스를 민간이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혼합재원을 사용하는 사업형태이다. 그러나 민간이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공공자금이 투입되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도 혼합재원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PPPs는 혼합재원의 하위에 있는 한 사업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

혼합재원과 혼동하기 쉬운 또 하나의 개념은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이다. 두 가지가 혼동되는 이유는 두 개념 모두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영향의 동시 달성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합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원이 혼합되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이고, 임팩트 투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의 한 형태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 다만 임팩트 투자에 주로 혼합재원이 활용되며, 혼합재원이 투자되는 곳 또한 주로 임팩트 투자 사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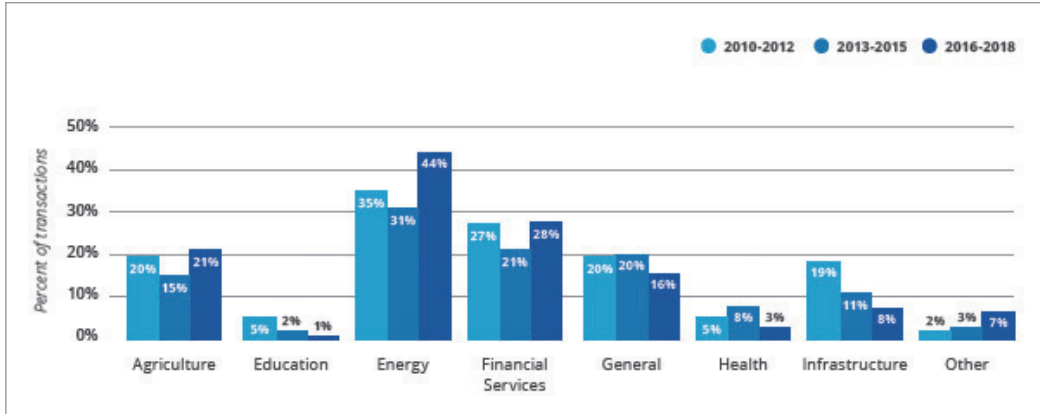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혼합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또한 함께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혼합재원은 여러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개발재원 증대를 통해 SDGs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혁신적 금융수단 활용함으로써 지원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원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실질 지원 감소 우려가 존재하며, 에너지, 인프라, 기후와 같은 이익 보장 사업 위주로 개발재원이 편중되어 교육, 보건 등 사회분야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재원이 투입된 대부분의 분야가 에너지와 금융이다. 또한 민간투자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제한으로 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 및 책무성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재원 투입의 역효과로 시장 왜곡 및 상업재원의 투자 기회 박탈(crowding out)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Attridge and Engen 2019).

혼합재원을 둘러싼 이러한 우려를 인지한 듯이 OECD에서는 다양한 혼합재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양질의 기준에 맞춘 보다 나은 재원 혼합과 임팩트 달성을 위해 혼합재원이 지켜야 하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재원 혼합의 목적이 개발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상업적 재원 동원이 늘어나도록 재원 혼합을 설계해야 한다. 세 번째는 현지의 요건에 맞게 재

〈그림 6〉 혼합재원이 투입된 분야



출처 : Convergence 2019, 17

원 혼합이 조정되어야 하며, 네 번째는 자원 혼합을 위해서 효과적인 파트너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성과를 위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OECD 2018b).

최근 OECD DAC에서는 이 원칙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가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개발재원 논의에서 혼합재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통계 측정을 위한 명확한 보고 지침 또는 기준이 없어 OECD DAC 통계작업반에서 혼합재원 보고 지침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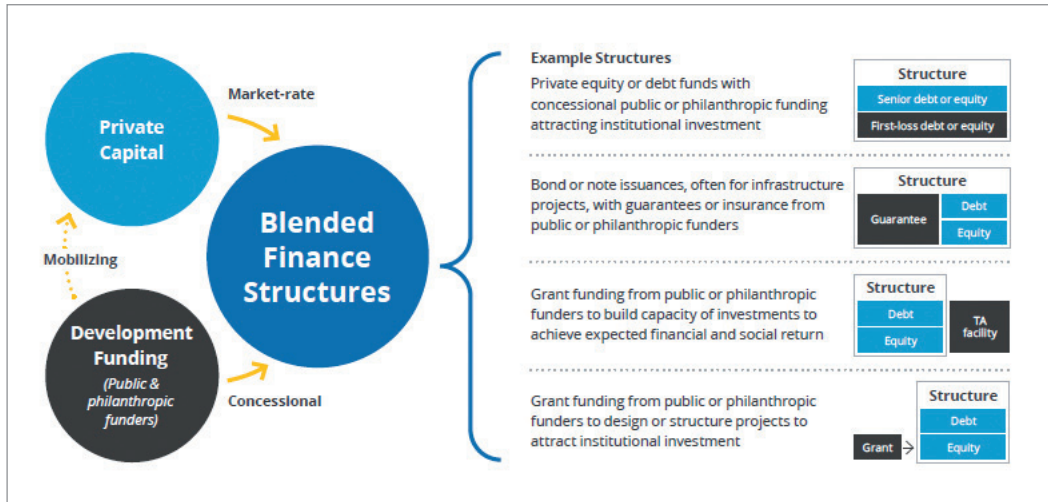
2. 혼합재원의 구조와 채널

민간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 투자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높은 위험과 낮은 수익률이다. 따라서 공공/자선개발재원은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자원 혼합을 유도해야하기 때문에 주로 미상환 위험이 높은 금융수단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원 혼합 구조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 번째 혼합구조는 공공/자선개발재원이 최초 손실(first-loss)을 담당하는 대출 또는 지분 투자를 제공하고, 민간자금이 선순위¹⁵⁾ 대출 또는 지분투자를 담당하는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

15) 대출한 돈의 상환 순위가 제일 먼저임을 나타내며 이는 미상환 위험이 가장 낮음을 뜻한다.

〈그림 7〉 혼합재원의 일반적인 구조



출처 : Convergence 2019, 7

되는 혼합구조이다. 두 번째는 공공/자선개발재원이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민간 자금이 해당 보증을 믿고 대출 또는 지분투자를 하는 구조이다. 세 번째 혼합구조는 공공/자선 개발재원이 상업성 및 개발효과 제고를 위해 투자 전후로 제공되는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민간 자금이 대출 또는 지분투자를 담당하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자선개발재원이 프로젝트 준비 및 디자인 단계에서 보조금(grants)을 제공하고, 민간자금이 대출 또는 지분투자를 담당 하는 혼합구조가 있다.

공여기관의 이러한 재원 혼합 활동을 관리하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주로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DFIs)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DFIs는 공공자금이 제공하는 금융수단들을 개발도상국의 민간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양자 DFIs¹⁶⁾의 경우는 대부분 공여국 정부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 이때 DFIs가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금융수단을 PSIs라고 하는데, OECD DAC에서는 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금융수단을 PSIs라고 정의하고 있다(OECD 2016c). 〈표 6〉은 PSIs의 종류를 보여준다.

16) 대표적인 양자 DFIs로 네덜란드 FMO, 독일 DEG, 프랑스 Proparco, 영국 CDC, 미국 DFC(전신은 OPIC)가 있다.

〈표 6〉 PSIs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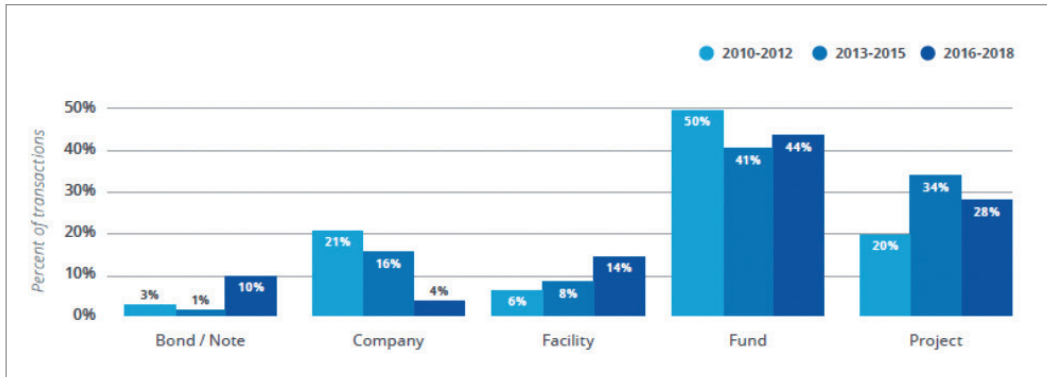
종 류	정 의
보조금(Grants)	보조금에는 수령자에게 법적부채가 발생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이전이 포함된다. 민간참여에서 DAC 회원국은 챌린지/혁신 기금을 통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CSO나 다자기관과 같은 이해 파트너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민간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활동을 수행한다. CRS에 따르면 보조금에서는 일반보조금, 이차지원금, 예치금 및 현금화를 기준으로 한 자본금 모집이 있다.
공채(Debt instruments)	공채에는 수령자에게 법적부채가 발생하는 현금 또는 현물이전이 포함된다. 공채에는 일반대출, 자산기반 증권, 상환형 보조금이 있다.
메자닌 금융상품(Mezzanine finance instruments)	메자닌(Mezzanine) 금융은 채권 또는 우선주로 구성된다. 후순위 대출, 우선 주식 및 기타 하이브리드 상품이 있다.
합동투자형태를 취한 자본과 주식(Equity and shares i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DAC의 ODA 수령목록에 올라 있는 국가에 대한 투자로, 장기이자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을 뜻한다. 보통주, 합동 투자형태의 주식, 수익채투자자가 포함된다.
보증 및 기타 단기 부채 (Guarantees and other unfunded liabilities)	보증은 위험분담 계약으로,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거나 투자금액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투자자에게 대출, 자본 또는 기타 수단에 대해 지불해야 할 전액 또는 일부를 보증인이 상환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다른 단기 임시 부채는 자금이동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향후 회수될 수 있는 수단을 뜻한다.

출처 : OECD 2016a, 43

앞서 설명한 4가지의 자원 혼합 형태는 5가지 채널(transac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채권, 기업, 퍼실리티(facility), 펀드(fund), 프로젝트라는 채널인데 각 채널별로 자원이 혼합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채권 채널에서는 공공/자선개발재원으로 기업 채권을 사고, 이 자금흐름이 민간투자자의 해당 기업 채권 구입을 유인하여 자원 혼합이 이루어진다. 기업 채널에서는 공공/자선개발재원이 기업¹⁷⁾에 보조금/기술지원 형태로 직접 재원을 투입하고 이로써 민간투자자의 해당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자원 혼합이 이루어진다. 퍼실리티와 펀드 채널에서는 공공/자선개발재원이 퍼실리티나 펀드에 재원을 투입하고, 이 자금흐름이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해당 퍼실리티가 지원한 사업이나, 해당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여 자원 혼합이 이루어지고 이 자금이 개발도상국 기업에 투자된다. 프로젝트 채널에서는 공공/자선개발재원이 프

17) 주로 사회적 기업이나 SMEs에 재원을 투입한다.

〈그림 8〉 재원 혼합을 위해 사용되는 채널의 비중



출처 : Convergence 2019, 14

로젝트에 직접 재원을 투입¹⁸⁾하고 이 자금흐름이 민간투자자의 해당 프로젝트 투자를 이끌어 재원 혼합이 이루어진다.

〈그림 8〉은 재원 혼합을 위해 사용되는 채널의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펀드와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 펀드¹⁹⁾는 자본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재원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민간 또는 공공-민간 자본의 집합으로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CIV)의 한 형태이다. 펀드는 구성단계에서도 재원 혼합이 이루어지지만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사업이나 기업 레벨에서도 민간재원투자를 촉진하여 재원 혼합이 이루어진다. 퍼실리티²⁰⁾ 또한 CIV의 한 형태이며 공공/자선개발재원이 지정한 자금 배분으로 자본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하위 단계인 사업 레벨에서 재원 혼합이 이루어진다. 퍼실리티 개념에 대해 여전히 모호하다면 KOICA의 창의적가치창출(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 프로그램이 퍼실리티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18) 모기업과 법적으로 구분된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함에 있어,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모기업의 그것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프로젝트의 재원을 조달하는 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다.

19) A fund is a pool of capital which can be comprised of a mixture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 resources that provides financing to direct investees(e.g. projects or companies) or indirect investees(e.g. through credit lines or guarantees) that provide on-lending. In addition to mobilising commercial capital at the fund-level, this type of CIV may also mobilise additional financing at the project, or investment, level(Basile and Dutra 2019).

20) A facility is an earmarked allocation of public development resources(sometimes including support from philanthropies), which can invest in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a range of instruments with the purpose of mobilising additional finance(e.g. commercial) through its operations.(Basile and Dutra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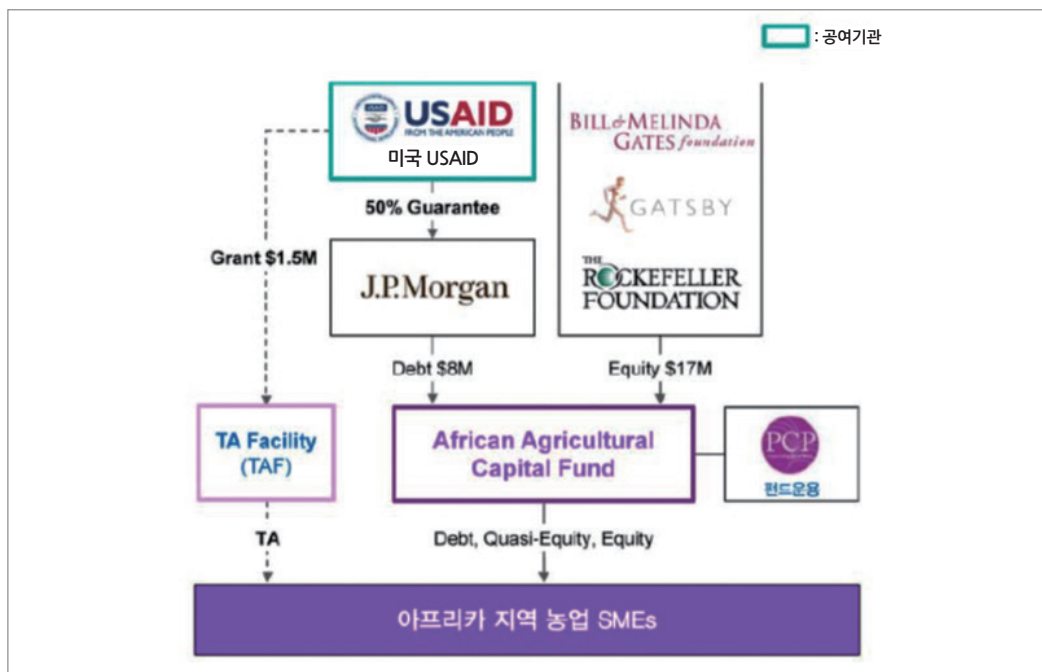
3. 주요 채널 사례

1) 펀드(Fund)

재원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채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펀드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재원 혼합의 약 44%가 펀드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혼합재원 형성에 기여한 펀드가 약 189개에 달할 만큼 펀드는 재원 혼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OECD 2018a). 펀드의 관리 주체는 주로 민간자산운용사로 펀드 중 약 72%가 이들 자산운용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Basile and Dutra 2019). 펀드의 재원 혼합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펀드로 <그림 8>의 African Agricultural Capital Fund(AACF)를 소개하고자 한다.

AACF는 동아프리카의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의 생산성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는 임팩트펀드이다. AACF의 자본구조를 보면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곳의 자선자금이 지분투자자로 1,700만 달러를 펀드에 출자하고, 민간 자본인 JP모건이 800만 달러 대출로 펀드에 참여하였다. 공여기관인 USAID는 JP모건이 대

<그림 9> AACF의 혼합재원 자본 구조



출처 : 김정남 등 2018,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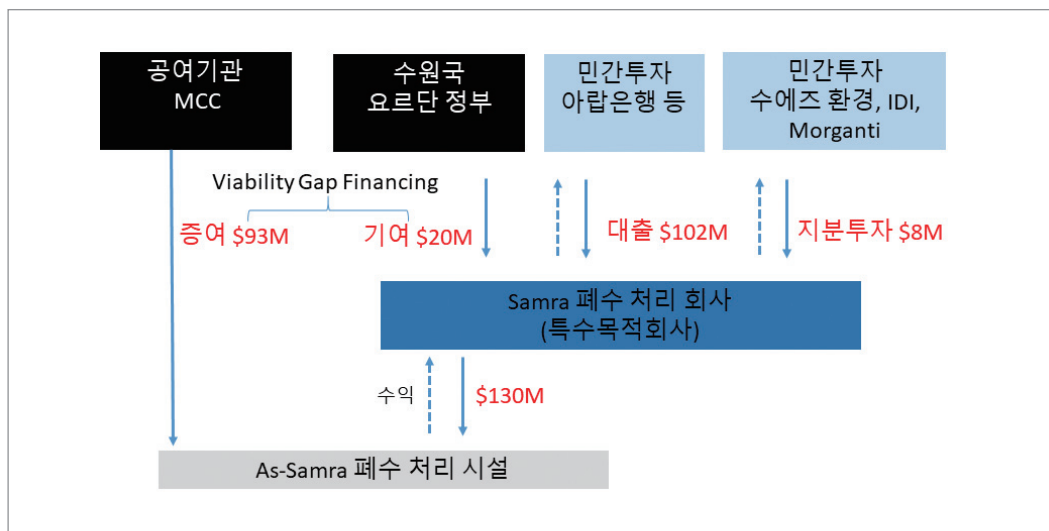
출해 준 금액의 50%(400만 달러)를 보증함과 동시에 증여로 기술지원시스템(Technical Assistance Facility; TAF)에 1,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AACF는 PCP라는 투자회사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있으며, 투자처는 아프리카 지역 농업 SMEs이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상품은 대출, 메자닌, 지분투자이다. 이 사업에서 ODA는 1,500만 달러이고, TOSSD는 ODA에 동원된 민간재원인 2,500만 달러를 포함한 4,000만 달러로 계산될 수 있다.

2) 프로젝트

펀드 다음으로 재원 혼합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채널이 프로젝트이다.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재원 혼합의 약 28%가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림 10>의 요르단 폐수 처리 시설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공여기관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MCC)은 요르단 정부가 Samra 폐수 처리 회사와 PPP²¹⁾로 추진하려고 계획한 폐수처리시설 증축 및 운영 사업의 높은 실행가능성을

<그림 10> 요르단 폐수 처리 시설 프로젝트의 재원 조달 구조



출처 : World Bank 2016, 2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1) PPP 형태 중 건축-운영-이전(build-operate-transfer)으로 계약되었다.

확인하고, 수원국 정부의 해당 사업 기여자금 중 부족한 금액(9,300만 달러)을 해당 폐수 처리 시설에 직접 보조금으로 제공하였다. MCC의 보조금은 아랍은행의 Samra 폐수 처리 회사 앞 1억 2백만 달러 대출 및 수에즈환경, IDI, Morganti라는 3개 민간기업의 8백만 달러 지분투자자와 혼합되어 As-Samra 폐수 처리 시설 증축 및 운영에 투입되었다. 이 사업에서 ODA는 9,300만 달러이고, TOSSD는 ODA에 동원된 민간재원인 1억 천만 달러를 포함한 2억 300만 달러로 계산될 수 있다.

3) 퍼실리티(Fac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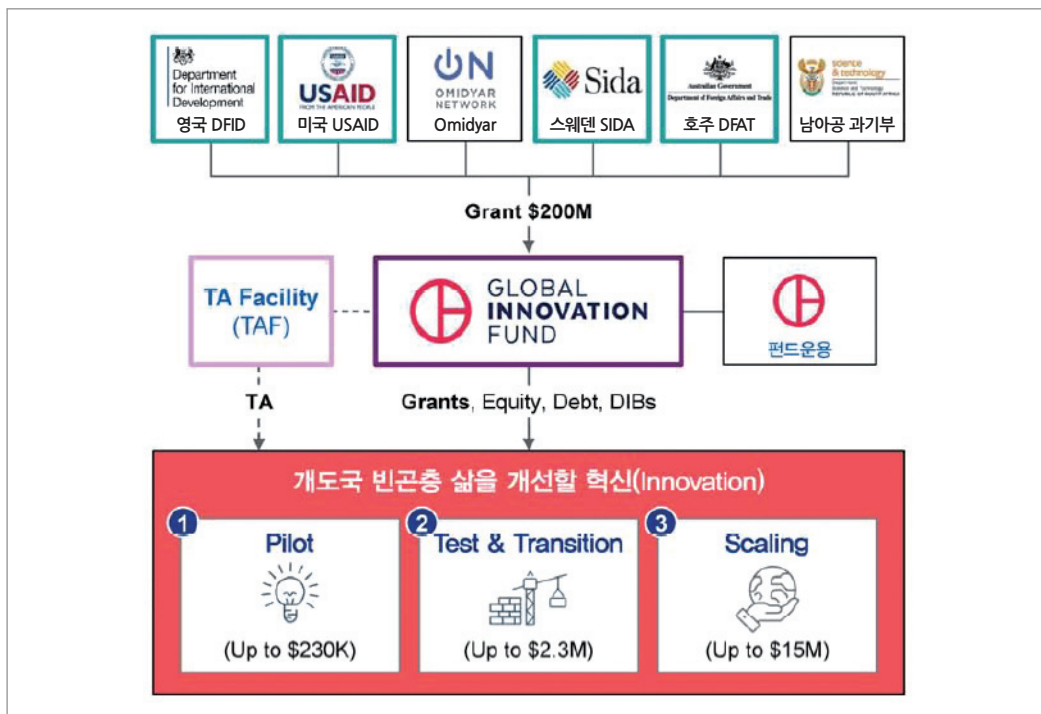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채널이 퍼실리티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재원 혼합의 약 14%가 퍼실리티를 통해 이루어졌다. OECD(2018a)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혼합재원 형성에 기여한 퍼실리티가 약 167개가 만들어졌으며 대부분이 다자 DFIs, 양자 DFIs 그리고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퍼실리티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KOICA의 CTS 프로그램이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으나, 사례로는 Global Innovation Fund(GIF)를 소개하고자 한다.

GIF는 명칭은 펀드이지만 채널분류상 퍼실리티로 분류가 된다. 그 이유는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IF 내 자본은 개발재원과 상업자금이 혼합이 아닌, 개발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6개의 공공/자선개발재원이 2억 달러를 출자하여 GIF를 만들고, 동명의 운용사²²⁾가 이 자금을 관리하며 개발도상국 빈곤층의 삶을 개선할 혁신사업에 보조금, 지분투자, 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다. GIF 투자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출자기관에 배분하지 않고 GIF 자산으로 귀속시켜 재투자 자금 및 운용비용으로 사용한다(김정남 등 2018). 이 사업에서 ODA 금액은 2억 달러 출자금 중 Omidyar와 남아공 과기부에서 투입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며, TOSSD는 2억 달러 출자금 중 남아공 과기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다만 추후 GIF가 지원한 혁신산업으로 투자된 민간재원이 발생하면 그 금액도 TOSSD 계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혼합재원에서 공공/자선개발재원은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금나 기술지원 같은 증여수단보다는 대출이나 지분투자, 보증과 같은 비증여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앞서 펀드, 프로젝트, 퍼실리티 채널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모두 증여수단이 어떻게 민간투자재원과 혼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증여수단만을 사용할 수 있는 KOICA가 향후 혼합재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벤치마킹하여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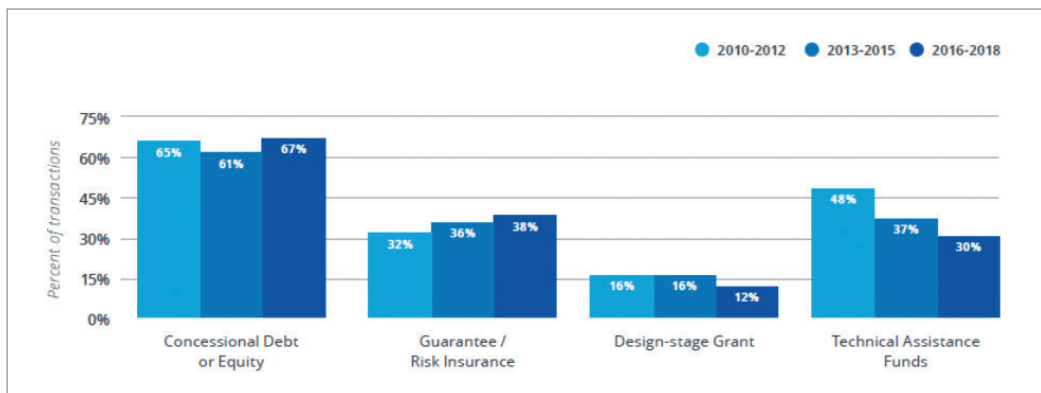
22) 출자기관들은 GIF 운용을 위해 제3의 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독립적인 운용사를 비영리기관으로 설립함. 해당 운용사의 명칭도 GIF이다.

〈그림 11〉 GIF 구조



출처 : 김정남 등 2018, 56

〈그림 12〉 공공/자선개발재원의 금융수단별 비중



출처 : Convergence 2019, 19

IV. 제언

1.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변화 필요성

TOSSD라는 새로운 개발협력 통계 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국내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규범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 협력대상국가 및 기관은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조 2항)”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 기구를 포함한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제2조 4항)”로 규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서술한 것처럼 TOSSD 적격 대상국가와 협력대상 국제기구 및 기관은 OECD/DAC가 정한 개발도상국과 국제기구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위법규와 규정부터 현행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관련 법규나 정책들은 ODA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 관계나 이해관계자, 사용가능한 금융 수단과 재원 동원 방식이 분화되고 복잡해진 TOSSD 체제에서는 관련 정책 및 법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역량 강화

TOSSD 체제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협력 방식이나 사업 방식이 ODA 체제와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금융 및 투자 분석, 계량 분석 및 성과 관리, 경제성 분석, 디지털 기술 및 환경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역량 개발이 절실하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 국내에서의 전문성은 일정 부분 축적되어있을지 모르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및 커뮤니케이션의 복잡성, 환경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국제개발협력의 맥락에서 전문성이 전통 공여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한 분석력을 갖춘 투자 전문가는 많지만, 코트디부아르, 르완다 또는 미얀마와 같은 해외 신흥 시장이나 최빈국 금융 시장에 대한 분석력을 갖춘 전문가는 여전히 부족하다. 반면, 식민 지배 경험이 있는 서구 전통 공여국들은 이전 식민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시장에 대한 많은 정보와 분석력을 갖추고 있다. TOSSD 체제에서는 개발도상국과의 상생을 위한 상업적 투자와의 결합을 권장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생의 개발협력관계 구축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3. 새로운 사업 추진과 시스템 구축

가. 혼합재원 사업

TOSSD에 민간재원 동원액이 포함되고 SDGs 이행 마감시한인 2030년이 가까워질수록 국제사회의 혼합재원형성 기조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KOICA도 무상원조를 바탕으로 재원을 혼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커니즘 도입이 필요하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펀드, 프로젝트, 퍼실리티 채널의 사례에서 보듯이 증여수단을 활용한 민간재원과 혼합이 가능하다.

먼저, 펀드 채널을 활용한 재원 혼합 방안으로, 직접 펀드를 구성하기 보다는, 대규모 국제펀드에 증여(운용보수 보조금) 및 기술지원을(피투자기업 대상) 제공하여,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민간재원과의 혼합을 시도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Emerging Africa Infrastructure Fund²³⁾와 Microfinance Enhancement Facility²⁴⁾의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해당 펀드의 출자기관 및 운용사와의 정기적인 미팅으로 통해 펀드 수립, 사업 및 조직 운영 체계 등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향후 KOICA 주도의 펀드를 직접 구성하여 혼합재원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채널을 활용한 혼합재원 추진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유상 연계사업 적극 발굴하고 차관 본사업과 연계한 타당성 조사와 같은 기술지원 제공을 계획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는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차관 본사업으로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MCC 등 해외공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당 기관이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PPP사업 목록을 공유 받아 함께 증여 수단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퍼실리티 채널 확대를 통한 혼합재원 추진은 현재 KOICA가 수행하고 있는 CTS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모대상을 개발도상국 기업까지 확대 추진하여 이들 기업에 보조금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KOICA의 지원으로 사업경쟁력을 키운 개발도상국 기업들은 민간투자자들에게 투자매력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는 민간투자재원을 유치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23) 4개의 공여국(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3개 공여기관(아프리카개발은행, KfW, FMO), 2개 민간기업(Allianz, Standard Chartered 은행)이 약 3억 9천 2백만 달러 지분투자자 6억 4천 2백만 달러의 대출로 참여한 펀드이며 Ninety One이라는 운용사가 관리하고 있다.

24) 1개의 공여국(독일), 7개 공여기관(KfW, FMO, EIB, IFC, OeEB, OFID, Sida), 2개 민간기업(Salvation Army Switzerland, Gastrosocial)이 참여하고 있는 펀드이며, 총 자산 규모는 6억 6천 8백만 달러로 BlueOrchard, Cyrano, responsAbility, symbiotics라는 4곳은 운용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나. 연구개발강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새로운 개발 과제들은 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응을 요구한다. 고갈되는 천연자원과 사막화, 종의 다양성 위기 속에서 탄소경제 기반의 지원에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과 전통 공여국의 상생을 위해서는 저탄소비용의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 TOSSD 체제도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세계를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반영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나 탄소포집 등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디지털 또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 저탄소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TOSSD를 활용해 각국 정부는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는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에 노력해야하며, 개발협력정책과 사업방식도 이에 맞춰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성과 및 데이터 관리의 주류화

TOSSD 체제에서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은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된다. 체제 출범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부족한 개발재원에 대한 정교한 통계를 근거로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혼합재원의 경우 개발목표 달성의 추가성(additionality)을 입증하고 민간재원 동원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 성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자 보호 조건이나 사기업의 업무방식 차이 등으로 개발협력 성과 관리에 새로운 고민사항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 개발협력기관과 민간기관이 모두 활용가능한 계량적 성과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따라서 개발협력 정책과 사업 모든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의 증거 중심 관리가 요구된다. 이는 비단 공여국 측면에서의 데이터 관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발도상국에서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가 마련되어야만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의 정확성과 효과성이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와 데이터를 사업의 부산물이나 사업 추진의 비필수요소로 간주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정책과 사업의 중심에 데이터 관리가 위치할 수 있도록 인식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V. 결론

1960년대 ODA의 정의가 마련된 이후, 약 반세기만에 최초로 지금 우리는 개발협력과 ODA의 측정 준거와 기준의 거대한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정치경제 및 환경의 변화는 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고, 이는 개발협력기관의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가 보여주듯 이제 세계는 전례 없는 초연결사회 속에서 공동운명체임을 서서히 자각하고 있다. 공동의 위기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협력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TOSSD로 대변되는 새로운 개발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존공영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참고문헌

- 김정남 등. 2018. KOICA임팩트 투자 및 혼합재원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박수영. 2017. “Beyond Aid 시대 개발협력 지형변화와 원조기관 대응방안 연구.” 개발과 이슈, no. 31.
- 박수영, 조한슬. 2015. Post-2015 체제의 ODA 정의 현대화와 총공적개발지원 분석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임소영. 2018.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혼합금융의 역할 및 활용방안.” 한국의 개발협력 2018, no. 2: 3-41.
- Ager, Philipp, and Markus Brückner. 2013. “Cultural diversity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the US during the age of mass migr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no. 64: 76-97.
- Attridge, Samantha, and Engen, Lars. 2019. *Blended finance in the poorest countries*. London: ODI.
- Basile, Irene, and Dutra, Jarrett. 2019. “Blended Finance Funds and Facilities-2018 survey results part 1.”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s*, no. 59.
- Bejraoui, Aussama, and Gaveau, Valérie, and Benn, Julia. 2019. “TOSSD - Tracking peace and security expenditures in support of the SDG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s*, no. 66.
- Clemens, Michael A. 2011. “Economics and emigration: Trillion-dollar bills on the sidewalk?.”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5 (3): 83-106. doi: 10.1257/jep.25.3.83.
- Convergence. 2019. “The State of Blended Finance 2019.” https://assets.ctfassets.net/4cgqlwde6qy0/58T9bhxExlNh2RilxWxSNe/ba56fa36c81349640179779ddd68cc99/t/4cgqlwde6qy0/58T9bhxExlNh2RilxWxSNe/ba56fa36c81349640179779ddd68cc99/Convergence_-_The_State_of_Blended_Finance_2019.pdf

d'Albis, Hippolyte, and Boubtane, Ekrame, and Coulibaly, Dramane. 2018. "Macroeconomic evidence suggests that asylum seekers are not a "burden" f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Science advances* 4, no. 6, eaaq0883. doi: 10.1126/sciadv.aaq0883.

Delalande, Guillaume, and Halvorson-Quevedo, Raundi, and Sangaré, Cécile. 2018. "The Philippines' Perspective on TOSSD."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s*, no. 42.

ESCAP. 2018. "South-South Cooperation in Asia and the Pacific-A brief overview."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SSC_Paper_v04_20180621_FINAL_formatted.pdf.

Evans, William N., and Fitzgerald, Daniel. 2017. "The Economic And Social Outcomes of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the ACS." *NBER Working Papers*, no. 23498. doi: 10.3386/w23498.

OECD. 2016a. *Private Sector Eng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DAC*.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16b. "TOSSD Compendium."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TOSSD%20Compendium2016.pdf>.

OECD. 2016c. "Understanding Key Terms and Modalities for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http://www.oecd.org/dac/peer-reviews/Inventory-1-Private-Sector-Engagement-Terminology-and-Typology.pdf>.

OECD. 2017a. *Addressing Forced Displacement through Development Planning and Co-operation: Guidance for Donor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Paris: OECD Development Policy Tools, OECD Publishing.

OECD. 2017b. "Migration policy debates No. 13." <https://www.oecd.org/els/mig/migration-policy-debates-13.pdf>.

OECD. 2018a. *Making Blended Finance 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18b. “OECD DAC Blended Finance Principles for Unlocking Commercial Finan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edfi.eu/wp/wp-content/uploads/2018/01/20180118-OECD-DAC-Blended-Finance-Principles.pdf>.

OECD. 2020. “TOSSD Reporting Instructions.” http://www.oecd.org/dac/tossd/TOSSD%20Reporting%20Instructions_February%202020.pdf.

OECD/UNCDF. 2019. *Blended Finance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19*. Paris: OECD Publishing.

Ortega, Francesc, and Peri, Giovanni. 2014. “Openness and income: The roles of trade and mig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2. no. 2: 231-251.

World Bank. 2016. “Case Studies in Blended Finance for Water and Sanitation.” <http://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959621472041167619/pdf/107976-Jordan.pdf>.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연구자료

연구정보 2020-06-205

